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지하도상가 관계자가 참여하는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활성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상호 협력과 조정을 통하여 지하도상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활성화 자문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정함(안 제7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0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45, 팩스 032-440-8766, 이메일 : adiosever@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인천광역시장”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지하도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활성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하도상가 활성화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가의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4.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도상가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상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하도상가 활성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회의원
 3. 상가 업무 관련 인천광역시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4. 지하도상가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및 사용자(「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8호에 따른 임차인을 말한다)를 대표하는 사람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특별회계의 관리·운용) 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인 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관리·운용) - ----- ----- 인 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신 설>	제7조의2(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지하도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다 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 속으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활성화 자문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하도상가 활성화 전략 수 립에 관한 사항 2. 상가의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4.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도상가 활성화 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 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

현행	개정안
	<u>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상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 <u>1. 지하도상가 활성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u>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회의원</u> <u>3. 상가 업무 관련 인천광역시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u> <u>4. 지하도상가의 관리를 위탁 받은 자 및 사용자(「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8호에 따른 임차인을 말한다)를 대표하는 사람</u> <u>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 <u>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u>

현행	개정안
	<u>한다.</u>

관련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제22조(조례) -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
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
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